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무적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49호)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76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09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1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 요	1
II . 검토의견	7
1. 의무적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백혜련의원안)	7
2. 자립지원 내용에 상담지원 포함 등(강명구의원안)	18
3.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사업 실시(서영석의원안)	22
4. 통합사례회의 설치·운영 근거마련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무 지정 등(임호선의원안)	287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7.
-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 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2.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3.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4.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6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17.
- (3) 회 부 일 : 2025. 1. 20.

나. 제안이유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다.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제1항).

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안 제71호제3항).

II. 검토의견

1. 의무적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백혜련의원안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2세 미만 영유아 시기 지자체장 등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 ----- ----- ----- ----- -----교 육(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 한다)----- -----.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6세 이상 아동의 보호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을-----.

④ -----아동학대예방교육을-----

⑤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제36조의2(영유아 가정방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환경 파악

2. 아동 양육에 대한 상담

	<u>3.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양육 지도</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u> <u>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임.
- 현행법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동의 보호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임.

-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 사업(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함 (2025년 예산 10억 8,700만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부모교육 영상·교재 제작 및 배포,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부모 교육 신규 개설, 아동 대상 복지급여(부모급여, 보육료 등) 신청 시 동영상 교육 수강 연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고 있어 교육 이수자 현황 등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신부 및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임신 시기부터 제고하고, 특히 자기 보호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어린 연령의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48,522건,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5,739건인데,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부분을 차지¹⁾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1)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비율이 2021년 83.7%, 2022년 82.7%인 것으로 나타났음(『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및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건수 중 6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최근 3년간 약 20%에 달하는데 이 중 보호자 학대 비율은 96~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6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자 비율 및 보호자 학대 비율>

(단위: %)

구분	6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비율	보호자 학대 비율
2021년	20	97.4
2022년	17.3	96.7
2023년	18	96.1

* 기준연도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인 건수의 비율

** 기준연도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건수의 비율

-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개정안에서 의무적 아동학대예방교육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된 임신부는 파악이 가능²⁾하나, 신고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2)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신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수과약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방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환경 파악 등을 의무적
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임.

□ 현행법 체계는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관리 및 재학대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생략)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
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생략)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1조³⁾) 보건복지에서는 이를 방문 면접조사 방식⁴⁾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등을 통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제15조의⁴⁵⁾).

-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실시되어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 10만명 가량을 발굴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 3)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됨.
- 5)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황>

(단위: 명)

연도	발굴 대상자	현장 조사		
		현장종결	서비스 연계	신고 등 경찰 수사의뢰
2022년	99,820	84,426	15,294	100
2023년	99,612	78,981	20,541	98
2024년	111,478	83,615	27,710	153

* (1~3분기) 모형+기획 발굴, (4분기) 가정양육 3세 아동 전수조사

□ 한편, 개정안은 모든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양육 환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모든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을 의무화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고려하여 임의적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방문 대상 영유아 가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는바⁶⁾, 개정안에서도 가정방문

6)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사업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현황 >

1. 목적 :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2.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등		
3. 대상 : 서비스 신청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4. 시행 : 보건소(2024년 기준 68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		
5. 서비스 내용		
구 분	기본방문	지속방문
대 상	출산후 8주 이내 가정	고위험군 임산부 가정
방문횟수	1회(약 60~90분)	출산 전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 까지 지속
내 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 신생아 돌보기 등0	- 발달단계 확인 - 아기와 소통하기 등

□ 그러나, 현재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68개 보건소(2024년 기준)에서만 추진 중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고, 아울러 현행법(제36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로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아동 양육상담’등의 업무를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제36조)상 보건소의 업무 >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 학대예방교육 의무화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모의 교육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모든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위기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자립지원 내용에 상담지원 포함 등(강명구의원안 제38조 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조치에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u>3년마다</u>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 ----- ----- ----- ----- ----- <u>매년</u> ----- -----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및 자산형성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 최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매년 약 1,200~2,600명이 보호종료되어 2023년말 기준으로 보호종료아동은 9,970명에 이름.

<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9,970명	3,843명	767명	5,360명
2023년	1,173명	581명	146명	446명
2022년	1,740명	717명	124명	899명
2021년	2,102명	726명	157명	1,219명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 자료 : 보건복지부

- 먼저, 자립지원 조치에 상담 지원 추가와 관련한 사항임⁷⁾.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은 10점 만점⁸⁾에 5.6점으로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자살생각 유경험률도 전체 청년(10.5%)보다 높은 46.5%로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7) 제21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자립지원조치에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935호,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8) 0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5점: 보통, 10점: 매우 만족함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음,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임.
-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상황,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욕구를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23년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의 경우(조사기간: 2023.5.24.~ 2023.11.30.) 보호조치가 종료된 5,8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음.

< 2023년 보호유형별 자립지원 실태조사 참여인원 >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보호종결인원	4,327	813	6,263	11,403
참여인원	1,830	621	3,384	5,835

*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자립지원 실태조사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보면, 청년 실태조사는 분야별 2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3년, 정신건강·고독사 등은 5년인바, 유사 실태조사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 각종 법률상 실태조사 현황 >

실태조사명	근거 법률	주기
청년실태조사	「청년기본법」	2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3년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기본법」	3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3년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3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3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년
보육 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태조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3년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년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향후 5년간 6억 7,100만원(연평균 1억 3,400만원)으로 추계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심리·일상생활 상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공감하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나 정책적 변화가 자립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태·욕구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현행 3년 주기가 적절하며, 매년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설문 참여 피로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사업 실시(서영석의원안 제4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자산관리사업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자산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이하 “자산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사업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u> <u>1.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지원</u> <u>2. 자산관리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u>

	<u>3. 그 밖에 자산관리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대상 아동 및 자산의 범위, 자산관리사업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제38조 및 제42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①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⁹⁾.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외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금융자산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제43조).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최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축 습관 증진, 금융 이해도 향상, 재정적 신중함 개선 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음¹⁰⁾.

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개정안은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정부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에 대해 지출 관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이 경제적 자립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내용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병기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24. 12, p.164.

- 그 외, 개정안에서는 자산관리사업의 대상을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산관리사업 지원기관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므로(「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같이 그 대상을 ‘아동’으로 수정하는 방안¹¹⁾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 소요를 유사 사례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준용하여 연 평균 4억 8,800만원으로 추계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사업에서도 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 설치 사례가 없고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자산을 직접 신탁받아 관리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현행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학자금·취업훈련비 등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관리하고 있어 현 체계 내에서 자산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지원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42조제2항), 개정안에서도 대상 아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안 제44조의2제3항), 법률에서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실익이 적다고 보임.

4. 통합사례회의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무지정 등(임호선의원안 제22조의6 신설 및 제29조의7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안 제22조의6 신설 및 제29조의7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이하 “통합사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
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1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2. (생략)

<신설>

③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
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
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
료기관”이라 한다)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되도
록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
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
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

3. ~ 7. (생략)	<u>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u> 3. ~ 7.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통합사례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조속한 배치,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 체계 개편, 아동학대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아동학대 관련 내용-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아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
 - (초기대응) 교육 확대·지침 마련 등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대응인력)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조속한 배치, 업무여건 개선(조사차량 등)
 - (분리보호) 쉼터 확충, 일시보호체계 강화로 차질 없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 (입양) 입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월)
 - (발굴)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 위기 포착
 - (대응체계) 진술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분리보호 시 학습권 보장,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 등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 (인식개선) 보편적 부모교육 제공 및 '긍정 양육 129원칙' 확산
 - (인프라) 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지속 확충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3.4월)
 - (예방)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 정보 연계 강화 등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 추진,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
 - (대응) 아동학대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등) 강화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는 2019년 38,380건에서 2023년 45,771건으로 증가, 재학대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사건도 최근 5년간 40~50명 수준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21년 5,517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에도 4,048건으로 전체 학대 판단 건수의 15.7%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최종 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42	43	40	50	44

*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3,431	3,671	5,517	4,475	4,048

* 재학대: 최근 5년간 신고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현행법 체계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¹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의학·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아동복지법」 제22조의5 제1항¹³⁾)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응급조치 이후 형사사법적 절차로 이어지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조를 취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

- 12)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13)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 ⑧ (생략)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구조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유기적 작동을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202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3. 1. 2.)에 따르면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의체로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합사례회의 개요 >

1. 통합사례회의 운영목적

-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운영함

2. 통합사례회의 기능 및 주요역할

- 통합사례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학대피해 의심사례 등에 관련된 사항
 -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련한 사항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련한 사항
 - 그 외 회의 참석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통합사례회의 설치 및 구성

- (설치주체) 시·군·구별로 설치
 - ※ 반드시 별도의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회의체 통해 활용 가능함.
- (구성)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수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학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추가
 - (전문가 자문체계)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반드시 구축
 - ※ 지역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4. 통합사례회의 운영 절차

- 통합사례회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개입의 신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현장조치 진행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1) 현장 판단이 어려워 현장조치 미실시한 경우 : 긴급 통합사례회의

- 회의 개최 요건
 - 응급조치, 즉각 분리에 이르지 않은 상황
 - 현장에서 비대면(유선 등)으로 의료적 소견 등 전문가 자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전문가가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 개최를 요청
- (논의내용)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상태 확인 및 학대 개연성, 학대행위자 분리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 (회의방법)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하며 회의결과는 비공개하고 서면으로 작성·공유
 - (회의자료)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판단 및 조사서, 전문가 소견서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피해아동 상태 및 보호조치 판단 자료 추가
 - (회의준비)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협의하여 진행하고 전문가 섭외 및 피해아동 진료·검사 동행, 안건작성, 회의결과 작성 등 기관 간 협업
 - * 통합사례회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안건작성, 회의결과 작성
- (시간)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 * 회의 요청(D), 피해아동 진료 및 검사 등(D+1~2일), 회의개최(D+3일)
- (장소) 회의실(대면) 또는 영상회의(비대면)
 - * 피해아동 진료 및 검사 소견서 외 전문가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개최

2) 즉각분리 등 현장조치 실시한 경우 : 일반 통합사례회의

- (요건)
 - 현장조치 이후 추가적 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
- (논의내용) 피해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아동의 건강, 심리상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조치사항* 등 논의
 - * 조치 지속 여부, 추가 필요조치, 사후관리 방안, 피해아동 지원방안 등
- (합동점검 필요 사례) 분리조치까지 필요 없지만 위험성을 보이는 신고 건은 주기적 합동점검 필요 사례*로 선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 * 반기별 합동점검 시 필수적으로 점검 추진
- (회의방법) 참석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준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합동으로 함. 비공개 원칙이며 회의결과 서면으로 작성·공유
- (시간·장소) 피해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과 협의하여 시간·장소 선택
 - ※ 통합사례회의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회의를 요청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현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원, 책임 면피 등의 사유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도록 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러한 통합사례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판단 여부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두텁게 하며, 아동학대·재학대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중 실시간으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는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회의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의체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지자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부분과 관련된 사항임.
- 「아동복지법」은 2017. 10. 24. 개정(2018. 4. 25. 시행)으로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치료·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9조의7¹⁴⁾).

14)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가족·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가족·친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 복지시설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실시하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을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2024년 6월 기준 전국 381개 의료기관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광역 전담의료기관 1개 소당 1억원(국비 50%), 사업관리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광역지자체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4	19	27	17	13	24	15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	24	12	18	23	17	27	13	381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전담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38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되지 않은 시·군·구가 58개 지자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자체단 1개소 이상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병원,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체계적·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신청을 통한 전담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정부지원 등 유인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 및 제도적 유인책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